

2004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의안 번호	76
----------	----

제출년월일 : 2003. 11.
제출자 : 평창군수

1. 제안이유

2004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편성하고 평창군 의회의 심의, 확정을 받으려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2004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70,20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7,947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29,814백만원, 특별회계가 40,392백만원이 증액되었음.

나. 세입예산은

일반회계가 지방세 12,401백만원, 세외수입 11,105백만원, 지방교부세 65,000백만원, 지방양여금 16,140백만원, 재정보전금 2,403백만원, 국·도비보조금 22,765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10,053백만원, 지방양여금 4,278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26,061백만원임.

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경상예산 38,203백만원, 사업예산 80,235백만원, 채무상환 3,334백만원, 예비비등 기타 8,041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경상예산 3,070백만원, 사업예산 34,616백만원, 채무상환 2,706백만원임.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118조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년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년도개시 50일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예산안을 시·도의회에서는 회계년도개시 15일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의회는 회계년도개시 1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정 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30조

-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투·융자사업(이하 "투·융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계획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31조

- ①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를 총칭한다.
- ②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기타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32조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관·항으로 구분한다.